파주시공고 제2026-3004호

파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파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「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11월 20일

파 주 시 장

1. 자치법규명: 파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2. 개정이유

○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개정에 따라 “재난피해자지원센터” 설치·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해당 조례에 반영하고,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반영하여 전반적인 정비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조례의 목적, 용어의 정의 및 재난현장 대응단계에 관한 사항(안 제1조～제3조)
○ 통합지원본부 설치·운영 및 현장책임관 지정에 대한 사항(안 제4조～제9조)
○ 재난현장 상황전파 및 주민대피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～제11조)
○ 재난현장 자원 동원요청 및 출동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12조～제14조)
○ 재난현장 긴급구조 지원 및 수습·복구체계 전환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5조～제17조)
○ 재난현장 상황파악 및 통보, 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8조～제22조)

4. 자치법규안 : 파주시 홈페이지(http://www.paju.go.kr)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

5. 의견제출

가. 제출기일 : 2026년 12월 11일까지(21일간)
나. 제출방법 : 서면·우편·팩스 등
다. 기재내용 : 성명·주소·생년월일·연락처·의견
라. 제출기관 : 파주시장(안전총괄과 사회재난예방팀)
○ 주소 :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, 안전총괄과(우 10932)
○ 전화 : 031-940-4691 / 팩스 031-940-4679 / 이메일 abcd23456@korea.kr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 : 파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생 년 월 일 :

○ 전 화 번 호 :

개정안 내용	의 견	비 고

➡ 민원인 편의고려, 임의서식임(의견제출 관련 정해진 서식은 없으며 필수 기재내용작성 후, 자유롭게 제출)